

##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 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졸업제
							구분	공고	접수	선정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 선도	수출지향형	540	2년	10	65%	상반기	1월	2월	4월	적용
		글로벌협력형					하반기	5월	6월	9월	
	중소기업 유망기술	일반 등	472	2년	5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적용
		구조혁신					하반기	3,5월	4,6월	7,9월	
		국가전략기술					하반기	4,6월	5,7월	7,9월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사업화	(1단계) PoC·PoM	200	9개월	1	75%	상반기	1월	2월	4월
TRL점프업		(1단계) PoC·PoM	100	9개월	1	75%	상반기	3월	4월	6월	
구매연계·상생협력		303	2년	6	75%	상반기	1월	2월	4월		
투융자연계 기술개발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	1,202	3년	20	75%	하반기	2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예외	
		특화형		3년	30	75%					
	글로벌 팁스	일반형	647	4년	50	75%					
		특화형		4년	60	75%					
	DCP	기술도전형	417	3년	50	75%					
		생태계혁신형		4년	200	75%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졸업제
							구분	공고	접수	선정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711	1.5년	2	75%	상반기	'25. 12월	1월	3월	적용
							하반기	3월	4월	7월	
	TIPS	일반 트랙	1,204	2년	8	75%	상반기	1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예외	
							하반기				
딥테크 트랙		420	3년	15	75%	상반기					
					하반기						
디지털기반 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22	2년	6.6	75%	하반기	5월	6월	9월	예외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50	5년	55	75%	하반기	4월	5월	6월	적용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1단계)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17.5	6개월	4.37	100%	상반기	1월	2~3월	4월	적용
	(2단계) 공정최적화R&D		12.5	2년	10	75%	하반기	8월	8월	9~10월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1단계) PoC		36	6개월	3	75%	상반기	2월	3~4월	5~6월	예외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기술개발	(2단계) 사업화R&D	167	2년	2.6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적용
	산연협력 기술개발	(2단계) 사업화R&D	71	2년	2.6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지역혁신선도 기업육성(R&D)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577	2년	7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예외
	지역기업 역량강화		155	2년	2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65	3년	기준 연봉 50%	50%	상반기	1월	1월	6월	예외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42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1월	6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20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상시	상시	
	중소기업연구인력 현장맞춤형양성지원		48	1년	최대 0.15	100%	상반기	1월	상시	상시	

- 1)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 2)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 3) 지원비율 및 추진일정 :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 1 정책방향

- ① (지역 생태계에 과감한 R&D 지원) '26년 신규과제 선정 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지역 전용 R&D 활성화 추진  
\* ▲ 주요 5개 사업은 '26년 신규과제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기업에 지원하도록 목표 설정,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점 2점을 모든 사업에 적용
- ② (민간투자과 연계한 R&D 지원 강화) 스케일업팁스 확대, 글로벌팁스 신설 등 기존 창업기업 중심 팁스 R&D를 창업 → 성장 → 글로벌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제로 개편
- ③ (기술사업화 촉진)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과 시장의 간극을 최소화 하고 기술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 ④ (분야별 전략적 R&D 투자) 중소기업의 AI·디지털 전환 촉진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 4개 사업 지원

##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3 신청 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 [www.iris.go.kr](http://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세부 사업별 과제 신청·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명시 예정,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및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 원활한 과제 신청·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국가연구자번호(舊 과학기술인번호)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회원 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발급

#### 4 세부 사업별 공고

- 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http://www.mss.go.kr))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www.iris.go.kr](http://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http://www.ntis.go.kr))

####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다만, 연구개발비 내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현금·현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

#### 6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공동)이 과제 협약 시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7 보안등급 분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 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8 지원제외 사항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 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원 가능

- ①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 ②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 ③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
- ④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 ⑤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⑥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경우
  -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관련규정 또는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⑦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중소기업 R&D 졸업제 적용 사업을 '20년부터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

\* 단, 졸업제 적용 예외 사업은 추가로 수행 가능

- ⑧ '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 단,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 가능 (아래 표 참조)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 시 기술개발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 >

'25년 이후 신규로 협약하여 수행 중인 과제 수	추가 수행 가능 과제 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예외 사업
0개	1개 가능	2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1개 (졸업제 적용 사업)	수행 불가	1개 가능
1개 (졸업제 예외 사업)	1개 가능	1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 9 관련 법령 및 규정

-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운영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 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2.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 **지원규모** : 4,942억 원(신규 1,012억 원, 계속 3,930억 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 지원내용

- ① **글로벌선도**(540억 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글로벌협력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해외 진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 기술개발 지원
- ② **중소기업유망기술**(472억 원) :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글로벌선도	수출지향형	최대 2년, 10억원 이내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정공모
	글로벌협력형	최대 3~5년, 15~25억원 이내	75% 이내	
중소기업유망 기술개발	국가전략기술	최대 3년, 100억원 이내	75% 이내	
	일반	최대 2년, 5억원 이내		
	소부장			
	구조혁신			

## (2) 민관공동기술사업화

### □ 사업개요

-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

□ **지원규모** : 1,299억 원(신규 603억 원, 계속 696억 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 지원내용

- ① **기술이전사업화**(200억 원)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② **TRL점프업**(100억 원) : 전략기술분야 실험실 단계의 고난도 기술을 기술 성숙도(TRL) 향상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 연구기관·대학 등과 공동R&D 필수 수행 (1단계는 필요 시, 2단계 과제 선정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 ③ **구매연계·상생협력**(303억 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지원내용>

기술이전사업화 · TRL점프업	1단계('26년 지원)	2단계('27년 지원)
	PoC-PoM	사업화R&D

\*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은 '27년 2단계 사업화R&D 과제 선정 시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

\*\* '26년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내역사업은 1단계(PoC-PoM)만 지원, '27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우수과제를 선정·2단계(사업화R&D) 지원 예정

###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최대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TRL점프업			지정공모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자유, 지정공모

### (3)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시장에서 성장가능성, 유망성 등을 인정받아 투자 또는 융자를 유치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스케일업 촉진

#### □ 지원규모 : 4,570억 원\*(신규 2,265.8억 원, 계속 2,304.6억 원)

\* 융자연계형 계속과제 190억 원 포함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 지원내용

- ① **스케일업 팁스**(1,202억 원) : 민간투자사(VC 등), 연구개발전문회사 등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스케일업 지원
- ② **글로벌 팁스**(647억 원) : 해외 VC 등의 검증 또는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선별하여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R&D 지원
- ③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416.7억 원) :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미션) 중심 R&D 프로젝트 전략 지원

####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	최대 3년, 20억 원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특화형	최대 3년, 30억 원 이내		
글로벌 팁스	일반형	최대 4년, 50억 원 이내		
	특화형	최대 4년, 60억 원 이내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기술도전형	최대 3년, 50억 원 이내		지정공모
	생태계혁신형	최대 4년, 200억 원 이내		

#### (4) 창업성장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7,864억 원(신규 2,335억 원, 계속 5,529억 원)

□ **지원대상** : (공통)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로 예외 적용

\*\* 지원대상 세부 자격조건은 내역사업별 사업 시행 공고에서 확인

##### □ 지원내용

- ① **디딤돌**(711억 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성장 촉진
  - **(첫걸음)** 중기부 R&D 수행 경험이 없는 첫 도전기업을 대상으로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 지원
  - **(도약)**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초격차 1000+ 프로젝트, 민관협력OI 등 타사업 연계 등을 통해 창업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 ② **TIPS**(1,624억 원) : 성공벤처인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5년, 2억 원	75% 이내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TIPS	일반 트랙	최대 2년, 8억 원		
	딥테크 트랙	최대 3년, 15억 원		

## (5)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중소기업(50인 미만)의 작업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77억 원(신규 22억 원, 계속 55억 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구 분	지원대상	비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급기업)	산업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컨소시엄
공동연구개발기관 (도입기업)	산업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2개사 이상)	

### □ 지원내용

- **(R&D)** 도입기업(50인 미만)의 작업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실증)** R&D 결과물의 현장 적용 촉진을 위해 Test-Bed 도입기업(50인 미만)을 활용하여 실증 및 성능 검증 추진 → 현장 보급 및 확산

###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디지털기반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최대 2년, 6.6억 원	75% 이내	품목지정

## (6)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CBAM('26 ~ ) 등 글로벌 탄소 규제의 확대·강화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 지원규모 : 50억 원(신규 50억 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기술개발(공급) 및 수출(수요) 중소기업, 산·학·연 등 공동 연구기관, 탄소감축 실증(검증)기관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요

\*\* 탄소감축 실증(검증)기관과 과제별 1:1 매칭을 통한 탄소감축 효과 측정·검증

□ 지원분야 :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2대 핵심품목(철강, 알루미늄) 지원

수출 품목	중점 기술 분야	세부 기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강</li> <li>• 알루미늄</li> </ul>	•연소 연료 및 원료 대체	•석유화학연료대체	•열에너지 순환
	•단위공정 개선 및 전력저감	•열처리공정 고효율화	•알루미늄 재자원화
	•원료·부품 재사용 제품화	•제조공정 단축	•부품 재사용·재제조

###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 확보부터 현장 실증을 통한 감축 효과 확인까지 완결성 있는 기술개발 지원
  - **(R&D)** 탄소감축이 시급한 중소기업 수출 2대 핵심품목(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 **(실증)** 기술 적용 시 공정 조건·생산 제품별 예상 감축 효과 확인, 수요 기업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실제 감축량 확인 등 단계별 실증

###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최대 5년, 55억원 이내	75% 이내	지정공모

※ 상기 내용(지원분야 및 내용 등)은 별도 세부사업 공고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7)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중소 제조기업의 공정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대표공정도 기반 공정최적화 R&D 지원으로 혁신적 KPI 제고 및 AX 기반 마련

### □ 지원규모 : 30억 원(신규 30억 원)

### □ 지원대상 :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연구기관, 대학 등
- (공정최적화R&D) 중소 제조기업 등

### □ 지원내용

- ①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17.5억 원) : 전문연구기관이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제조현장 진단 및 핵심공정기술을 발굴하여 공정최적화 방안도출
  - (공정별 분석) 공정별 연구기관 선정 및 대표공정 분석
  - (제조현장진단) 중소제조기업 제조현장 진단 및 취약공정 발굴
  - (공정최적화 방안 도출) 취약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최적화 방안 도출
- ② 공정최적화R&D(12.5억 원) : 현장진단 결과, KPI 개선효과 등을 종합하여 제조공정을 선정\*하고, 공정최적화·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 \* 제조현장진단 참여기업 중 공정기술의 파급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10개사 선정
  - (공정최적화) 작업동작 효율화, 공정흐름 단축 등 공정최적화 지원
  - (공정고도화) AX·DX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장비·시스템 고도화 지원

###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 진단	최대 6개월, 437백만원 이내	100%	품목지정
공정최적화R&D	최대 2년, 10억원 이내	75%	자유공모

## (8)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개발

### □ 사업개요

- 중소 제조업의 비정형 작업 대응력 강화와 공정·품질 최적화를 위한 Multi AI Agent 기술개발 지원

### □ 지원규모 : 36억 원(신규 36억 원)

- 지원과제 : 12개 내외(과제수행 및 평가 후, '27년 R&D 과제 4개 후속지원)

### □ 지원대상

- (필수) 기술개발(공급) 및 제조(수요) 중소기업
- (선택) 산·학·연 등 공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 지원내용

- 중소제조 특화 산업분야\* Multi AI Agent 기술개발을 위한 PoC 시범연구 지원(● 연구개발 설계, ● 데이터 구축, ● AI Agent 구조 설계)

\* 중소제조 특화산업 지원 분야 : ①식품, ②뷰티, ③제약, ④자동차부품

#### ☞ 『Multi AI Agent 기술』 개요

- (정의) 복수의 자율적 AI Agent가 협업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구조이며, 핵심기능 (①인식 ②처리 ③행동 ④학습 및 적용 ⑤자율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환경(물류 최적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의 문제해결 체계 형성

#### < AI 에이전트 vs Multi AI 에이전트 비교 >

주요 기능	AI 에이전트	Multi AI 에이전트
구성	- 단일 에이전트	- 복수의 에이전트 협업 구조
기능 수행 방식	- 순차적, 단일 흐름	- 병렬적, 역할 분담형
확장성	- 제한적	- 고확장성, 유연한 시스템 구성
적합 업무	- 단순·반복적 과업	- 복합·동시다발적 과업
적용 예시	- 이메일 자동 작성, 문서 요약	- 자율주행 협업, 제조공정 최적화, 물류관리

###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PoC	최대 6개월, 3억원 이내	75%	자유공모

## (9) 산학연 Collabo R&D

###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산학협력) 대학의 우수인력·장비를 활용한 협력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및 참여인력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 (산연협력) 연구기관의 우수인력·장비를 활용한 협력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통한 매출 증대

### □ 지원규모 : 394.2억 원(신규 238.5억 원, 계속 155.7억 원)

\* '26년은 2단계(사업화R&D) 신규과제만 선정

###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컨소시엄형 예비연구 과제는 예외)

### □ 지원내용

- 예비연구단계를 통해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화 기술개발
  - \* 2단계(사업화R&D)는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완료)한 과제만 신청 가능

### □ 지원조건

과제유형	단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컨소시엄형 (2~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10.4억 원 이내	75% 이내	분야지정
일반형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2.6억 원 이내		자유공모

## (10)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 사업개요

- 지역 주력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매출, 고용 등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용 R&D사업)

□ **지원규모** : 969억 원(신규 732억 원, 계속 237억 원)

□ **지원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2개 이상 중소기업 및 대학·대·중견기업 컨소시엄

\* 중소기업(주관)+ 중소기업(공동)(필수) + 대학(필수) 또는 대·중견기업, 연구기관(선택)

- (지역기업 역량강화)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잠재기업

\* 중소기업(주관) + 대학·대중견기업·연구기관(선택)

### □ 지원내용

-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577억원) : 혁신성·성장성을 갖춘 (예비)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협업과 산학협력 중심 기술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성장 견인
- 지역기업 역량강화(155억원) : 지역주력산업 분야 (예비)선도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최대 2년, 연 7억 원	75% 이내	품목지정
지역기업 역량강화	최대 2년, 연 2억 원	75% 이내	품목지정

## (11)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 사업개요

-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341억 원(신규 175억 원, 계속 166억 원)

### □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64.5억 원)
  -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 이내 지원
  - \*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만 39세 이하)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42억 원)
  -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연봉의 50% 이내 지원
  - \*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0억 원)
  - 중소기업으로 연구인력\* 파견 시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이내 지원
  -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48억 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24년에 선정된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48억원 지원(센터당 12억원 지원)
  - \* (Level 1) 중소기업 연구인력 매칭, (Level 2)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Level 3)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 참여 중소기업 모집 공고는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에서 별도 시행 예정

### □ 지원조건

구 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50% 이내	자유공모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연봉의 50%(최대 5,000만 원/년)	50% 이내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년 파견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50% 이내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기업당 최대 1,520만 원/년	100% 이내	

### 3. 사업별 문의처

□ 사업별 문의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연락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선도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창업성장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기술혁신사업실, 창업성장사업실, 기술상용화사업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	기술이전사업화	기술개발과	(기술상용화사업실)	
	TRL점프업			
	구매연계·상생협력			
투·융자연계기술개발	스케일업팁스	기술혁신정책과	(스케일업팁스실)	
	글로벌팁스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기술개발과	(창업성장사업실)	
	TIPS	신산업기술창업과	(스타트업팁스실)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기술혁신정책과	(창업성장사업실)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미래기술 대응지원단	(기술혁신사업실)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제조혁신과	(제조AX사업실)	
	공정최적화R&D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PoC 시범연구	제조혁신과	(제조AX사업실)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기술개발	기술개발과	(기술상용화사업실)	
	산연협력기술개발			
지역혁신선도 기업육성(R&D)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혁신정책과	(지역특화사업실)	
	지역기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인력정책과	(지역정책기획실)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담당 부서 및 전문기관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 시 시스템 관련 문의처 : 1877-2041